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3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코로나 19 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세무 및 법률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코로나 19 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출처: 금융감독원, 2021. 2. 24]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1. 추진배경

□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23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2. 처리방안

(1) 기본방향

□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20년 사업보고서(3월), 1분기보고서(5월), 반기보고서(8월)에 대해서도 기 시행

(2) 처리절차

□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1.)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인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제재면제 신청방법]

- ①(신청기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한공회
-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 ②(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 ③(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 ① 신청기간을 3.8.~3.12.(5 일간)로 운영합니다.
-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1) 회사의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 19 또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 ② (감사인) 코로나 19 또는 코로나 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난 '20.12월 배포(금감원·한공회)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 가이드'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 (의결) 3.24. 증권선물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1.1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 47일 연장)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45일 연장된 6.14.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②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21.1 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3. 상법시행령 관련안내

□ 이번 정기주총부터 '20.1 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 31 조제 4 항)이 적용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통상 3 월)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가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출처: 금융감독원, 2021. 2. 22]

[심사·감리 결과]

①(실적) 금융감독원이 '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사(표본 79사, 혐의 44사)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여건이 악화되어 동 실적은 전년(139사) 대비 11.5% 감소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 심사 절차로 종결(전년 31사 대비 51사 증가, 164.5% ↑)

②(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63.4%(78사 조치)로 전년(59.0%) 대비 4.4%p 증가(표본 심사·감리 44.3%, 혐의 심사·감리 97.7%)

③(위반유형)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75.6%) 대비 5.2%p 증가

*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 관련 위반비중 : '18년 75.0%→'19년 75.6%→'20년 80.8%

④(위반동기)'고의' 위반 회사(14사)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78사)의 17.9% 수준으로 전년(8.5%) 대비 9.4%p 증가

⑤(과징금) '고의' 위반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과징금부과 총액(94.6억원)은 전년(49.8억원) 대비 크게 증가(90%↑)

⑥(회계법인 및 회계사) 회계법인 37사 및 공인회계사 95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재무제표 심사제도 본격 시행으로 회계법인 등 조치건수 대폭 감소(회계법인 57.5% ↓, 회계사 46.3% ↓)]

[시사점]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①회사 및 감사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되고 ②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등으로 적발 가능성도 증가

→회사는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고, 감사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충실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

1. 분석대상

□ 금감원이 '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3사,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회사 80사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여건이 악화되어 동 실적은 전년 대비 11.5% 감소('19년 139사→'20년 123사)

- *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심사 절차로 종결(전년 31사 대비 51사 증가, 164.5% ↑)
-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79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44사

심사·감리 관련 용어(新외감법 기준)

- **심사:**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기준 위반사항(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
- (표본심사)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 (혐의심사)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기준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업무(재무제표 심사결과 위반사항이 중과실 또는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른 감리)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 45일(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 사업연도개시 이전)

2.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분석

(1) 회사

< 지적률 >

□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총 123사)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사*로 지적률은 63.4%이며 전년 대비(59.0%) 4.4%p 증가

* 유가증권시장 소속 26사(지적률 60.5%), 코스닥·코넥스 소속 52사(지적률 65.0%)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 대비 4.0%p 감소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0%) 대비 19.7%p 증가

① (표본)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3년 평균 59.8%)이 테마(3년 평균 41.3%) 및 무작위(3년 평균 37.5%) 보다 높은 수준

- 위험요소를 고려한 심사·감리 지적률은 '20년에 특히 높은 수준인 바('18년 69.2% → '19년 45.2% → '20년 72.4%),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효과적인 위험요소 등을 지속 발굴할 필요

※ 심사대상 표본 선정방법

- 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 테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 무작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②(혐의) '19년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와 관련한 조치양정기준 완화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한 회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선정기업 대부분을 조치하여 지적률 증가

<위반유형>

□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75.6%) 대비 5.2%p 증가

* 당기손익·자기자본 관련 위반(A유형) 비중: '18년 75.0%→'19년 75.6%→'20년 80.8%

** '20년 중 78사에 대하여 총 156건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지적(1사당 평균 2건)하였으며, 이 중 당기손익·자기자본의 변동과 관련한 위반이 있는 회사 기준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계속 증가

<위반동기>

□ '20년도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 적발 비중은 17.9%인바, 회계부정정보 증가 등으로 전년(8.5%) 대비 크게 증가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4배 기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에 따라 과실비중이 증가('19년 67.1%→'20년 71.8%)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하면 양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4배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과징금>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감소*('19년 23사→'20년 17사)하였음에도, 고의 위반사례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부과총액('20년 94.6억원)은 전년(49.8억원) 대비 크게 증가(90%↑)

*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하여만 부과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해임권고(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포함) 조치 건은 13사로 전년(10사) 대비 증가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20년 중 32개 상장사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감사절차 소홀로 37건을 조치, 전년(87건) 대비 크게 감소(57.5%↓)

◦재무제표 심사결과 과실 위반이 확인되어 경조치한 40 사의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

-한편,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6개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미부과

◦'20년의 조치(총 37건) 중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대한 것은 13건으로 35.1%* 수준,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

* (4대회계법인 비중) '18년 25.6% → '19년 25.3% → '20년 35.1%

□ (공인회계사) '20년 중 조치한 공인회계사는 총 95명으로 회계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전년(177명) 대비 조치건수가 감소(46.3% ↓)

3. 시사점

(1) 외감법 상 과징금부과 등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사례 증가

□ 新외감법 시행('18.11.1.)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18회계연도(12월 결산 기준) 위반부터 적용되어,

◦'20년 중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직무정지 조치 부과

※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부과금액의 8.1배에 달하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하고, 대표이사·담당임원에게 각각 회사 과징금의 1/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존재

□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

(2) 기업의 리스크를 고려한 충실한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필요

□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리를 실시하여 중대한 감사절차 소홀이 확인되는 경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부과

◦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감사소홀 여부를 판단

※감사대상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다른 경우, 감사인이 동일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절차 소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최근 동 일반원칙을 반영하여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개정('21.2.8. 시행)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후 필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가 고의적인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

□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회계부정신고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 노력으로, 동 제도가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

◦ '19년~'20년 중 고의적인 회계분식이 적발된 21개 상장회사 중 10사('19년 4사, '20년 6사)는 회계부정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 실시

□ '20.3월 익명신고제도 도입 이후 신고채널 다양화 등을 추진 중인바, 앞으로 회계부정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누구든지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장회사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동참할 필요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세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년 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특법 등 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126의 2)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input type="checkbox"/>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좌 동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① ~ ④ 금액의 합계액 ○ (좌 동)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 (좌 동)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의 3)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input type="radio"/>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1.6.30.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7 의 9)

현 행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input type="radio"/>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input type="radio"/>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input type="radio"/>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3. 16.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4.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조특법 §29 의 7)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 세액공제 (단위: 만 원)					<input type="checkbox"/> '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1년 유예 ○ (좌 동)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60세 이상 국유공자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①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②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신 설>					○ (좌 동) ○ (좌 동)
					-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개정이유> 코로나 19 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020.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 3)

현 행	개 정
<p>□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p> <p>*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p> <p>○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p> <p>·(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p> <p>·(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p> <p>○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p> <p>*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예: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p> <p>·(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p> <p>·(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p>	<p>□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p> <p>○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p> <p>·(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p> <p>·(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p> <p>○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p> <p>·(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p> <p>·(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p>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6.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 의 11, 법인세법 §75 의 7)

현 행		개 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구 분	가산세율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1%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	0.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1%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신 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67, 2021.03.10)

(사실관계)

- (주)○○은 금융업 관련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주)○○의 '19.12월말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억원 중 투자자산인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이 ***억원으로 9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인 A회사가 발행한 주식 ***,***주(주)○○ 지분율 45.22%)가 포함됨.
- 신청인은 (주)○○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보유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표준 신고 예정

(질의)

- 신청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인 출국일 당시 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가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 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같은 영 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02.24)

(사실관계)

○ 국내 거주자들은 질의법인을 통해 미국 B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고, '20년 B법인은 별도의 미국 법인인 A법인과 역삼각합병(이하 본건 거래)을 함.

- '20.00.00.(B법인의 배당금 지급) : B법인은 기존 주주들에게 B법인 1주당 \$0.00의 특별 배당("special dividend")명목으로 현금을 지급. 다만, B법인은 배당을 지급할 이익잉여금이 없음(질의1 관련 거래)
- '20.00.00.(소멸법인과 B법인 합병) : 소멸법인(A법인의 100%자회사)과 B법인(존속법인)이 합병하면서 B법인(존속법인) 주주에게 B법인 주식 1주당 A법인 주식 0.0주와 현금 \$0.00 지급(질의2 관련 거래)

(질의내용)

- 이익잉여금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주들에게 특별배당(Special dividend)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주주인 국내 거주자들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질의1")
-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들이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질의2")

(회신)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h2 style="text-align: center;">업 무 소 개</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